

공무수행사인이란?

(「이해충돌방지법」 제16조 제1항, 「청탁금지법」 제11조 제1항)

- 법령(조례, 규칙 포함)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(심의회, 협의회 등 명칭 불문)의 위원 중 **공직자가 아닌 위원**

예시)

- 「초·중등교육법」에 따른 **학교운영위원회**
 - 「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**학교폭력대책위원회**
 - 「교육공무원법」에 따른 **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**
 - 「학교급식법」에 따른 **학교급식위원회**
 - 「전라북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**학부모회**
 - 「전라북도 혁신학교 운영·지원」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**혁신학교 운영위원회** 등
-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소관 사무를 위임·위탁받은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(대표자 및 업무종사자)
 -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
 -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·평가 등을 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



공무수행사인이
규칙
알아야 할

청탁금지법 & 이해충돌방지법





공무수행사인이 알아야 할 청탁금지법

(“공무수행과 관련”된 행위에 대해서만 법 적용)

☞ 부정청탁의 금지(법 제5조)

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 된다.

☞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금지(법 제6조)

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은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서는 아니 된다.

☞ 부정청탁의 신고 및 처리(법 제7조)

부정청탁을 받았을 때에는 부정청탁을 한 자에게 부정청탁임을 알리고 이를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하며,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은 경우에는 해당 기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
☞ 금품등 수수의 금지(법 제8조)

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금액에 상관없이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.

☞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(법 제9조)

자신 또는 자신의 배우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해당 기관장에게 신고하고, 금품등을 받은 경우는 제공자에게 지체없이 반환,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에는 거부 의사를 밝혀야 한다.



공무수행사인이 알아야 할 이해충돌방지법

[시행 2022. 5. 19.]

☞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 신청(법 제5조)

직무를 수행하면서 직무관련자(직무관련자의 대리인 포함)가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안 경우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(전자문서 포함)으로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.

사적이해관계자(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)

- 가. 자신 또는 그 가족(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)
- 나. 자신(가족)이 임원·대표자 등으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·단체
- 다. 자신(가족)이 대리하거나 고문·자문 등을 제공하는 개인·법인·단체
- 라. 공직자로 채용·임용되기 전 2년 이내에 재직했던 법인·단체
- 마. 공직자로 채용·임용되기 전 2년 이내에 자신이 대리하거나 고문·자문 등을 제공했던 개인·법인·단체
- 바. 자신(가족)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의 주식·지분 등을 소유한 법인·단체
- 사. 최근 2년 이내에 퇴직한 공직자로서 퇴직일 전 2년 이내에 실·국·과장으로서 자신을 지휘·감독했던 상급자
- 아. 최근 2년 이내 1회 100만 원,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전거래의 상대방

☞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(법 제14조)

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또는 해당 기관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되며, 제3자로 하여금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거나 사적 이익을 위해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※ 공무수행사인이 아니게 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포함

☞ 부당이득의 환수 등(법 제22조)

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의무를 위반하여 자신 또는 제3자가 얻은 재산상 이익은 환수하고, 직무상 비밀 등을 이용하여 자신 또는 제3자가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은 몰수·추징한다.